**촬영장소 협조, 협정서**

용인공원그룹[재단법인 용인공원, ㈜용인공원라이프, ㈜와이피엘](이하 ‘공원’)과 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(이하 ‘제작사’) 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‘제작사’가 기획 및 진행하는 미디어 영상 제작물(드라마, 광고, 뉴스, 영화 및 각종 프로그램 등) 및 사진 촬영물 등의 제작을 위해 ‘공원’ 내 장소를 제공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으로 협정서를 체결한다.

**<장소 이용자(제작사/촬영팀)>**

* 이름/회사명 :
* 연락처 :
* 주소 :

**제 1 조 촬영 일정 및 장소**

가. ‘제작사’는 ‘공원’과의 허가 및 합의된 범위에서의 촬영을 진행한다.

나. 모든 촬영은 요청 건별 협정을 다시 체결한다.

* 촬영 날짜 :
* 촬영 시간 : (예시 : 오전 10시~오후 2시, 촬영 준비 및 촬영 정리 포함 시간)

■ 촬영 목적 : (예시 : 광고, 드라마, 방송, 영화 등)

**제 2 조 사용 제한 및 준수 사항**

-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 및 물건 등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.

- 촬영 시 ‘공원’ 내부 안치 시 촬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.

- 기타 방문객에 방해가 되는 촬영은 금지한다.

- ‘제작사’에서는 촬영으로 연계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을 책임지며

담당자를 정해서 ‘공원’ 측에 전달해야 한다.

(안전 담당자 이름/연락처: )

* 촬영된 야외 장지 및 봉안당의 고인 관련 개인 정보(성함/사진/편지 등 기타) 및 방문객, 모든 차량 번호, ‘공원’ 직원 등은 촬영 결과물 제작 시 영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블러 및 삭제 처리해야 하며 주요 블러 처리 결과물은 방송 전에 ‘공원’측에 결과물을 전달하여 확인해야 한다. 만일, ‘공원’에서 결과물에 대한 이의를 제기시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, 이를 반영하기 전까지 방송 등을 송출하여서는 아니된다.
* ‘제작사’는 촬영을 진행한 장소는 촬영 전과 동일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.

**제 3 조 제작사 제공 및 기타 사항**

1. 제작사는 아래 제공 및 기타 사항을 준비 및 동의해야 한다.

■ 촬영 영상을 제공(표준 형식 파일 MP4 및 JPG 등) 한다.

■ ‘공원’의 업체명(브랜드명) 및 로고 등 방송 스크롤 삽입한다.

■ 제작사가 제공한 촬영 영상물 등은 ‘공원’의 온드미디어(자사 홈페이지 및 SNS) 및 기타 마케팅 목적 활용에 동의한다.

**제 4 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**

1. 촬영 시, 사전 협의 내용과 차이가 있어서 ‘공원’ 측에서 이의를 제기 시 협정서 계약은 즉시 해지되며, 이의제기 시까지 ‘제작사’ 및 ‘제작사’ 관계자들은 촬영된 영상물 및 그 결과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2. ‘제작사’가 제2조를 위반 시 본 계약은 즉시 해지되며 ‘제작사’ 및 ‘제작사’ 관계자 들은 촬영된 영상물 및 그 결과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3. 만일, ‘제작사’가 위 가, 나 항을 위반시 ‘제작사’는 ‘공원’에 발생한 손해액에 따라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며, 추가 손해가 발생 시 ‘공원’은 ‘제작사’에게 추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4. 촬영으로 인해 제3자에 대한 권리침해, 제3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발생시 ‘’제작사가 이를 배상한다. 만일, ‘공원’이 이를 배상 시 ‘제작사’는 ‘공원’이 배상한 금액을 ‘공원’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**제 5 조 원상복구 회복 및 손해 배상**

1. 촬영이 완료되면, ‘제작사’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며, 원상회복의무를 완료했는지에 대해 ‘공원’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. ‘공원’에서 확인 결과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어 ‘제작사’에 이를 요구 시 ‘제작사’는 미비된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.
2. 위 가. 항과 같이 ‘공원’이 ‘제작사’에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‘제작사’가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훼손 또는 파손이 있을 경우 ‘공원’ 측에 원상회복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‘제작사’ 및 ‘제작사’ 관계자 들은 촬영된 영상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또한, 추가 손해가 발생 시 ‘공원’은 ‘제작사’에게 추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**제 6조 기타 조항**

1. 본 협정으로 인한 분쟁은 ‘공원’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한다.
2. 위 협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‘공원’과 ‘제작사’는 본 협정서에 각각 기명 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.

* 서류 제출
* ‘제작사’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* 공문 1부 (제작사 공식 공문, 로고 삽입) 및 촬영 기획안
* 초상권 동의서
* 담당자 명함

20 년 월 일

**공 원 용인공원그룹[재단법인 용인공원, ㈜용인공원라이프, ㈜와이피엘**

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새래로 158-33

이사장 김 동 균 (인)

**제 작 사**

대표이사 강 정 훈 (인)